



문서번호	문화체육과-10763
결재일자	2015.5.27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방침번호	구청장 방침 제316호

지방행정주사	생활체육팀장	문화체육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	구청장
김도현	박석대	이현식	소판수	이비오	05/27 정원오
협조					

2015년도 성동구청 유도부 운영계획



성 동 구

(문화체육과)

사전 검토 사항

::: 해당사항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항 목	검 토 여 부
사 업 구 분	신규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약(약속)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계속사업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인센티브/공모사업 <input type="checkbox"/>
소 통 분 야 고 려 사 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구 민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● 전 문 가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이 해 당 사 자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
기 타 고 려 사 항	일 자 리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환경영향 <input type="checkbox"/> 안 전 <input type="checkbox"/> 유지비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바른 공공언어 <input type="checkbox"/> 성 인 지 <input type="checkbox"/> 취약계층 <input type="checkbox"/> 장 애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디 자 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갈등발생 요인 <input type="checkbox"/>
타자원 활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중 앙 부 처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서 울 시 : 유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기 업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 ● 민 간 단 체 : 유 <input type="checkbox"/> () 무 <input type="checkbox"/>
언 론 홍 보 계 획	기획보도 <input type="checkbox"/> 보도자료 <input type="checkbox"/> SDTV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뉴스레터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동구소식지 <input type="checkbox"/> 기 고 문 <input type="checkbox"/> 전자행정서비스 <input type="checkbox"/> S N S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리플릿 등) <input type="checkbox"/> 없 음 <input type="checkbox"/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홍 보 제 목 : ● 중점 홍보사항 - - 	
<p>※ 우리 구만의 차별화된 사업내역과 중점 부각하여 홍보할 사항을 중심으로 '홍보제목'을 선정하여 간결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.</p>	

2015년도 성동구청 유도부 운영 계획

2015년도 성동구청 유도부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선수단 사기를 진작하여 경기력을 향상함으로써 각종 대회에서 우리구 위상을 드높이고자 함

I 운영 개요

1. 관련 근거

-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
- 「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, 제6조
- 제138차 서울시 정책회의 결정(2000.2.18.)
- 「서울특별시 보조금관리조례」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

2. 일반 현황

- 창 단 일: 2000. 12. 12.
- 합 숙 소: 성동구 상원길 77(성수동1가, 성수동우방아파트) 308호 / 115.41㎡

II 운영 계획

1. 성동구청 유도부

직책	직위	임무	비고
단장	행정관리국장	성동구청 유도부 대표 및 운영 총괄	
부단장	문화체육과장	단장 보좌	
간사	생활체육팀장	유도부 운영에 관한 일반업무 총괄	
감독		- 감독과 코치를 겸하여 성동구의 지시에 따라 선수를 지휘·감독 - 체계적·맞춤형 훈련계획 수립·시행 - 선수체력관리·경기지도 및 생활지도 일반 - 대회 출전 총괄 및 결과 평가·분석 - 우수선수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	
선수 (10인 이내)		- 각종 대회 참가와 훈련에 참가하고, 감독부재 시 주장 또는 감독이 지정한 1인이 자율훈련 주도 - 구청 주관 각종 행사와 자원봉사활동 참여 등	

2. 성동구청 유도선수단 구성

연번	성명	구분	입단일	2014년도 대회 성적	연봉액 (훈련비포함) 단위: 천원
1	 윤용발	감독	2007.1.1	-	34,802 (42,002)
2	 이나라	선수 (-70kg)	2010.1.1	- 전국실업유도선수권대회 1위 - 회장기전국실업유도연맹전 1위 - 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 2위 - 춘계실업유도최강전 3위	42,228 (48,646)
3	 배슬비	(-48kg)	2013.1.1.	-	20,710 (27,910)
4	 박종원	(-78kg)	2015.1.1	- 여명컵전국유도대회 3위 - 청풍기전국유도대회 1위 - 전국실업유도최강전대회 2위	34,800 (42,000)
5	 서수빈	(-57kg)	2015.1.1.	- 춘계전국대학유도선수권대회 3위 - 하계전국대학유도선수권대회 3위	27,800 (35,000)

3. 근무조건

가. 복무일반

- ① 훈련은 합숙훈련을 원칙으로 한다.(※단, 감독은 출퇴근)
- ② 선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정기간 출퇴근해야 할 경우 감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감독은 이를 지체없이 문화체육과에 통보한다.
- ③ 감독은 단장의 명령과 훈련계획에 따라 선수 훈련과 합숙생활 전반을 지도하며, 단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참여와 대회출전을 명할 수 있다.
- ④ 선수는 단장과 감독의 지시에 따라 훈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.

나. 훈련 및 대회참가

- ① 감독은 매월 말 선수를 지도·감독한 내용을 기재한 훈련일지를 문화체육과에 제출한다.
- ②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지·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, 관내를 벗어나 합숙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과의 승인을 얻어 출장명령을 득하여야 한다.
- ③ 성동구청 유도부는 단장의 결정에 따라 대회에 출전하며, 출전키로 한 경기에 고의로 불참하거나, 연 3회 이상 불참한 자는 차년도 연봉계약에 반영하거나 재계약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④ 성동구는 대회참가를 위하여 출전격려금과 숙박비·교통비 등을 지급하고 입상시 보상금을 지급한다.

다. 연가 및 특별휴가

- ① 성동구청 유도부는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18조를 준용하여 연 8일 이내의 연가를 사용할 수 있다. 또한 남은 연가일수에 대하여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「성동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」 제23조 규정에 의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.
- ③ 성동구청 유도부가 국내대회에서 반수 이상 입상하거나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단장이 인정하는 우수한 성적을 거둔 때에는 선수단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.

라. 급여

- ① 매월 공무원보수지급일(20일)에 연봉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한다.
- ② 매월 초, 기본훈련비(1인당 월600,000원)를 지급한다.
- ③ 익월 공무원보수지급일(20일)에 우수선수지원금(월1,000,000원)을 지급한다.
- ④ 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」 제4조 및 제8조제2항에 의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재직하다 퇴직하는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퇴직연금을 적립한다.

마. 후생복지

- ① 4대보험(건강, 국민연금, 고용보험, 산업재해보상보험)과 상해보험 가입으로 선수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.
- ② 합숙소 운영·관리에 필요한 운영비와 생활필수품 등 물품구매비를 지급하고 합숙소나 훈련에 필요한 물품과 부상방지용테이프 등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.
- ③ 컴퓨터, 인터넷, 정수기 등을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.
- ④ 매년 직장건강검진을 실시한다.

III

예산편성

● 예산액: 금306,295천 원(시비 143,800천 원(47%) 구비 162,495천 원(53%))

(단위 : 천 원)

구분	계	인건비 및 처우개선	전지·합동훈련 대회참가비	입상보상금	피복비 훈련용품비	운영보조비	예비비
계	306,295	238,118	12,000	16,600	13,000	12,600	13,977
시비	143,800	108,023	6,000	8,600	7,000	6,600	7,577
구비	162,495	130,095	6,000	8,000	6,000	6,000	6,400

※ 전년대비 시비 24% 증가(전년 116,300)

● 지급방법

- 급여, 기본훈련비, 우수경기인지원금, 입상보상금 등은 개인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.
- 대회 출전격려금과 숙박비, 운영비 등은 성동구청 유도부운영비통장(우리은행 1002-744-058343, 예금주 윤용발)으로 입금하고 연말에 정산한다.
- 유도부 운영비 통장 입금액은 대회출전격려금을 제외하고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.
- 선수단의 식사는 기본훈련비를 사용한다.
- 숙소관리비, 공공요금, 보험료 등은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출한다.
- 피복이나 장비 등은 문화체육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지급한다.

- 연봉책정: 연봉조정 기준표(별표1)를 기준으로 선수성적을 참고하여 적정금액에 대한 쌍방향협의 후, 매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연봉 조정
- 기본훈련비: 매월600천원/1인
 - 1일 30,000원 (주식비 20,000원 + 간식비 5,000원 + 목욕비 5,000원) × 20일 = 600,000원
- 4대보험: 부과고지서에 의거 납부
- 퇴직금 = 1일 평균임금 × 30일 × (총 재직일수/365)
- 우수선수 지원금:
 -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선수에게 지급
 - 월1,000천원(매월 1일 이상 입소시 지급)

① 급 여: 129,020,040원

- 감독(1명) : 운용발 2,900,170원 × 12개월 = 34,802,040원
- 선수(4명) : 이나라 3,519,000원 × 12개월 = 42,228,000원
 - 배슬비 1,725,830원 × 12개월 = 20,709,960원
 - 박종원 2,900,000원 × 12개월 = 34,800,000원
 - 서수빈 2,316,670원 × 12개월 = 27,800,040원

② 기본훈련비: 36,000,000원

- 36,000,000원 = 기본훈련비 600,000 × 12개월 × 5인
 - 기본훈련비(600,000원) = 일30,000원 × 월20일

③ 연금부담금 등: 17,737,320원

구 분	건강·장기요양보험료	국민연금	고용보험료	산재보험료
운 용 발	93,780	130,500	287,220	157,650
이 나 라	113,790	158,350		
배 슬 비	55,800	77,620		
박 종 원	93,770	130,500		
서 수 빈	74,910	104,220		
월별합계	432,050	601,190		
총 합 계	5,184,600	7,214,280	5,338,440	

④ 퇴직금: 13,361,670천 원

- 감독(1명): 운 용 발: 2,900,170원
- 선수(4명): 이 나 라: 3,519,000원 배 슬 비: 1,725,830원
박 종 원: 2,900,000원 서 수 빈: 2,316,670원

⑤ 우수선수지원금: 10,000,000원

- 10,000,000원 = 1,000,000원 X 10개월 X 1인

⑥ 우수선수영입비: 10,000,000원

- 10,000,000x1인 = 10,000,000원

⑦ 상.하반기 격려금 = 10,000,000원

- 1,000,000원x2회x5인 = 10,000,000원

⑧ 주방도우미: 9,600,000원

- 800,000x12개월x1인 = 9,600,000원

⑨ 감독활동비: 2,400,000원

- 200,000x12개월x1인 = 2,400,000원

2

전지·합동훈련 및 대회참가비

12,000천 원

인정일수

- 합동·전지훈련: 최대15일
- 대회참가: 대회일(경기일정에 따라 +,- 1~2일 이내)
※ 대회일수: 여명킵전국유도대회 5일, 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 2일, 전국체육대회 5일, 회장기유도대회 5일, 제주킵유도대회 4일, 춘·추실업연맹전 각 2일 등 7개

지급액 (숙박비 + 출전격려금 + 식비, 일비)

- 숙박비 1인 30천원/일, - 출전격려금(국내대회에 한하여 지급) 1인 60천원
- 식비 및 일비 1인 40천원/일

① 합동·전지훈련비: 금3,000,000원

- 3,000,000원 = 40,000원 × 15일 × 5인

② 대회참가: 금9,000,000원

(단위: 천 원)

대회명	일정	소요예산	숙박비 및 일, 식비	출전격려금	기타
여명컵전국유도대회	3월 10~14일	1,350	1,050=(70×3일)×5인	300 = 60 X5인	국가대표 선발2차전
춘계실업연맹전	5월	1,000	700=(70×2일)×5인	300 = 60 X5인	
청풍기 유도	6월	1,000	700=(70×2일)×5인	300 = 60 X5인	
KBS 전국체급별 선수권	6월 24~25일	1,000	700=(70×2일)×5인	300 = 60 X5인	국가대표 선발3차전
추계실업연맹전	9월	1,000	700=(70×2일)×5인	300 = 60 X5인	
전국체육대회	10월 28~ 11월 3일	300	-	300 = 60 X5인	
회장기 유도대회	11월 3~7일	1,350	1,050=(70×3일)×5인	300 = 60 X5인	국가대표 선발1차전
제주컵 유도대회	12월	2,000	700=(70×2일)×5인	300 = 60 X5인	항공료 1,000
총 계	8개대회			금 9,000천원	

3

입상보상금

16,600천 원

- 선수 입상보상금 : 입상보상금 지급기준 참조(별표)
- 감독 입상보상금
 - 국내대회 : 선수단 입상시 최고성적선수 입상보상금의 30%
- 성동구청 유도선수단 입상보상금
 - 국제대회 : 최고성적선수 입상보상금의 10%를 지급

① 선수 입상보상금: 금14,600,000원

입상 보상금 지급기준

(단위 : 천 원)

구분	등급	대회명	1 위	2 위	3 위
국내대회	A	- 전국체육대회 - 여명컵유도대회 - 청풍기 유도대회 - 체급별선수권대회 - 회장기유도대회	2,000 × 2명 = 4,000	1,000 × 2명 = 2,000	500 × 2명 = 1,000
	B	- 춘·추 실업연맹전	1,000 × 2명 = 2,000	500 × 2명 = 1,000	300 × 2명 = 600
	C	- 기타 국내대회	500 X 2명 = 1,000	300 X 2명 = 600	200 X 2명 = 400
국제대회	A	- 올림픽 대회 - 세계선수권대회	20,000 × 0명 = 0	10,000×0명=0	5,000 × 0명 = 0
	B	- 아시안게임	15,000 × 0명 = 0	8,000 × 0명 = 0	4,000 × 0명 = 0
	C	- 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 (국가대표 출전)	2,500 × 0명 = 0	1,500 × 0명 = 0	1,000 × 1명 = 1,000

- 국내대회 : 1위 7,000,000원, 2위 3,600,000원, 3위 2,000,000원
- 국제대회 : 3위 1,000,000원
- 성동구청 유도선수단 입상보상금: 1,000,000원 = 10,000,000원 X 10%

② 감독 입상보상금: 금2,000,000원

4 **피복비 및 훈련용품비** **13,000천 원**

피복 및 훈련용품은 일괄구매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

- 1인당 피복비: 2,000,000원
- ※ 유도복(500천원), 하계(500천원, 티셔츠, 반바지 등), 동계(1,000천원, 방한복 등) 지급품목은 스포츠용품으로 한정하며, 지급내용은 선수 개인 필요에 의해 정한다.
- 훈련용품비: 3,000,000원

- ① 피복비 : 2,000,000원 × 5명 = 10,000,000원
- ② 훈련용품비 : 부상방지용 테이프 등 3,000,000원

5 **운영보조비** **12,600천 원**

- ① 공공운영비: 6,000,000원
 - 숙소관리: 500,000원 × 12개월 = 6,000,000원
- ② 선수등록비: 3,000,000원
- ③ 차량보험: 1,000,000원
 - 차 량: 서울70라 5114(현대 중형승합, 12인승 스타렉스, 등록일 2008.1.15.)
 - 보험사: 삼성화재보험(2013.10.29.~2014.10.30.)

④ 유도부 상해보험: 800,000원

- 피보험자: 5인(감독1인, 선수4명)
- 보 험 사: 삼성생명(서소문법인지점 이형주 팀장 HP: *****)
- 보장내역

구 분		보장내역	비 고
일반사항		소 멸 형	
		3년 만기	
보험금수령자	사망 시	성동구청	
	상해 시	피보험자	
보 장 내 역	사망 시	2억 원	
	장해 시	1억 원	
	장해연금	1억 8천만 원	
	재해입원	6만 원	
	질병입원	3만 원	

⑤ 운영비 등: 1,800,000원

- 생필품 구매비 450,000원 × 4분기 = 1,800,000원(1,4,7,10월 지급)

6 **예비비 등** **13,977천 원**

① 생활가전제품 구입 및 기타 예비비: 12,777천 원

V **예 산 과 목**

- 문화체육과, 지역체육진흥, 전문체육육성, 직장운동경기부운영, 일반 보상금, 예술단원및운동부등보상금(301-10)

VI

행정 사항

1. 성동구 직장유도부 심사위원회 구성 · 운영

● 구성인원: 7명

- 위원장(1): 행정관리국장(단장)
- 위 원(6): 기획재정국장, 주민생활국장, 보건소장, 성동구체육회(3)
- 역 할: 유도부 운영에 관한 사항

2. 유도부 홍보

- 목 적: 구민에게 성동구청 유도부의 활동상을 알리고 선수의 자긍심 고취
- 내 용: 대회성과, 기록사진 등 홍보자료 수록 및 유도관련 자료제공
- 방 법: 소식지, 구 홈페이지 및 인터넷 방송국을 활용

3. 직장건강검진

VII

기 타

유도부 운영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를 준용하고, 예산에 관한 사항은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」의 규정에 따른다.

2016년도 연봉조정 기준표

2016년도 연봉조정 기준							비고
1. 연봉등급 기준 (단위: 천원)							
구 분	지도자	선수 (S급)	선수 (A급)	선수 (B급)	선수 (C급)	선수 (D급)	
연봉액	30,000 ~ 45,000	100,000 ~ 40,000	35,000 ~ 40,000	30,000 ~ 35,000	25,000 ~ 30,000	20,000 ~ 25,000	
※ 기본연봉: 기본훈련비를 제외한 당해연도 연간 총보수액 ※ 연 봉: 기본연봉+기본훈련비(연 7,200천원, 2014년 기준)							
2. 연봉조정 기준							
▷ 조정연봉액 = 기본연봉액 + (기본연봉액 × 조정률) 【조정률】 · 선수 : 평가표에 의한 개인별 조정률 적용(대회성적 반영) · 감독 : (선수최고조정률 + 선수최저조정률) / 2							
※ 대회실적, 지도력, 경기수준향상 및 종합적 판단에 의하여 단장이 총연봉의 3%를 가감할 수 있다.							
- 감독: 평균차등조정률 + 지도력평점 + 기타 - 기존선수: 계약기간 성적을 반영하여 개인실적별 차등조정률 적용 - 신규임용: 신규채용시 방침에 의거 계약체결 - 벌칙적용: 「성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21조 또는 제2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· 대회 불참 시 1회당 5점 감점 · 고의로 대회불참 3회 이상인 경우에는 연봉조정 대상에서 제외							

2016년도 연봉조정 기준

비고

○ 대회성적 기준표

대 회 명		1위	2위	3위	비 고
국내대회	전국체육대회	25	20	15	
	여명컵전국유도대회	25	20	15	국가대표 선발전
	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				
	청풍컴 전국유도 대회				
	회장기전국유도대회				
실업연맹유도대회 등 기타대회	20	15	10		
국제대회	올림픽대회	50	40	30	
	세계선수권대회				
	아시안게임	40	30	20	
	코리아오픈국제유도대회	30	20	15	

3. 차등조정률(국내대회)

구분	등급	국 내 대 회									
		A	B	C	D	E	F	G	H	I	J
평가점수		100~91	90~81	80~71	70~61	60~51	50~41	40~31	30~21	20~11	10점 이하
차등조정률		10%	8%	6%	4%	2%	0%	-2%	-4%	-6%	-8%

※ 평가점수가 100점이 넘는 경우 차등조정률의 1/2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

4. 차등조정률(국제대회)

구분	등급	국 제 대 회					
		A	B	C	D	E	F
평가점수		61~70	51~60	41~50	31~40	21~30	10~20
차등조정률		3%	2.5%	2%	1.5%	1%	0.5%

※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차등조정률의 1/2 범위 내에서 추가지급 가능

2015년도 대회 일정표 (예정)

구 분	대 회 명	운영보조비	비 고
1월		운영비-450,000원	유도복구매, 보험가입, 연맹가입
2월			동계훈련복, 부상방지용 테이프 구매 숙소 필요물품 구매(TV 등)
3월	여명컵전국유도대회(10~14) ※2014국가대표 2차 선발전 겸		
4월		운영비-450,000원	하계훈련복 구매
5월	실업연맹전(춘계)		
6월	KBS전국체급별선수권대회(24~25) ※2015국가대표 3차 선발전 겸 청풍기 유도선수권대회		
7월		운영비-450,000원	
8월			
9월	실업연맹전(추계)		
10월	제95회 전국체육대회(28~11.3)	운영비-450,000원	차량보험가입
11월	회장기전국유도대회(3~7) ※2014국가대표 1차 선발전 겸		
12월	제주컵 유도대회(미정)		